

# 企業內模範特許管理体制의 設計

## ◇ 調 査 部 ◇

### 第2章 取得特許의 利益寄與對策 (特許의 保全과 活用)

企業의 特許管理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자칫하면 發明의 把握과 그 權利化에 이르는 管理에 重點을 두는 나머지 取得한 權利를 어떻게 活用하여 企業의 利益에 貢獻시켜 나가느냐 하는 側面에 대하여는 疏忽한 感이 없지 않았다. 이것은 外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라는 消極的인 面이 特許管理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今后에는 保有特許의 戰略的活用을 圖謀하여 積極적으로 企業利益에 結付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取得한 特許權을 活用하는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그 保全이 前提가 된다. 따라서 取得特許의 利益貢獻對策으로서는 第2-1圖에 圖示한 바와 같이 크게 보아 2개의 System에 의하여 그 推進을 圖謀한다. 그 하나는 取得特許의 保全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取得特許의 活用System이다.

取得特許의 保全 System에는 Sub-System으로서 權利評價 System, 權利의 維持・管理 System 및 權利의 拋棄管理 System의 3개가 包含된다.

한편 取得特許의 活用 System에는 첫째로 自社製品에의 活用 System이 있고 둘째로는 他社에의 活用對策으로서의 機能을 積極적으로 發揮하는 Sub-System이 있다.

#### ① 取得特許의 保全System

取得特許의 保全 System은 保有權利를 定期的に 再評價하여 다음의 活用段階에서 도움을 주는 特許權의 維持・管理를 해나가는 것이 그 中心이 되는데 現在는 물론 將來에 있어서도 不要한 權利는 拋棄하여

特許料의 支拂등 保全費用의 減縮을 圖謀해 나가는 것도 重要한 機能이다.

##### 1. 權利評價System

###### 1) 意 義

特許를 取得하여 그 權利의 保全을 圖謀해 나가려면 特許料의 支拂 및 保全에 必要한 費用 등등相當한 費用이 所要된다. 이 費用과 權利를 保有하는데 따라서 發生하는 經濟的 效果와의 關係에서 拋棄해야 할 것과 保有할 것을 定期的に 再評價함으로써 保全業務의 効率化를 圖謀하는 것등이 이 System의 使命이다.

i) 權利評價는 特許의 保全과 活用을 圖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機能이라 할 수 있다.

###### 2) 事 例

###### 가) 權利評價 System의 概要

權利評價 System의 한 例를 第 2-2圖에 圖示한다. 여기서 重要한 點은 各權利마다 그 技術開發을 實施하고 있는 事業部門이 그 長期的 企業戰略에 의거해서 評價를 하여야 한다는 點이다.勿論 評價에 있어서는 그 技術에 關聯되는가 혹은 將來에 關聯될 可能성이 있는 製品의 製造部門 및 販賣部門에 까지 擴大하여 實施하는 것이 좋다. 評價結果가 權利의 拋棄에 이를 때에는 특히 top management의 決定을 받을 必要가 있다. 이것은 特許權等은 無體라고는 하나 財產權으로서 認定된 것이므로 그 拋棄는 企業經營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第 2-2圖은 top management, 特許部, 事業部門이 각자의 立場에서 評價에 대하여 어떠한 役割을 하는가를 나타낸一般的인 flow chart인데 특히 特許權의 評價에 있어서는 어떤 一定年限以上的 維持에 대하여는 急激히 特許料가 上昇해 가는 것과 같은 要素도 있으므로 特許部의 再檢討가 重要하다.

나아가 評價組織으로써 關聯部門의 責任者로 이루어진 評價委員會를 設置하여 여기서 評價決定을 하는 方

## ·□ 前進的特許管理시스템 開發을 위한 (8)

法도 있라.

#### 나) 權利評價의 機能

權利評價의 基本機能은 權利를 維持해 나가야 할 것과 權利를 抛棄할 것을 選別하는 것이다.

權利를 維持해 나가야 할 對象으로서는

① 自社製品에 實施되고 있는 것 혹은 將來實施될  
可能성이 있는 것.

② 他社가 實施하고 있는 것 혹은 他社에서 將來 實施할 可能性이 있는 것.

등을選擇할必要가 있다. 이중에서 ②안에는他社에서將來實施할可能性이있기는하나그確實度가明確하지않은防衛的價值밖에없는特許도있어그取扱은그技術分野혹은企業의그때그때의經濟的環境條件등에따라달라지게되므로後述하는評價基準에이를反映시켜서決定하여야할것이다.

한편 權利를 抛棄해야 할 對象으로서는 위의 ①②에  
包含되지 않은 것들을 들수 있으며 技術이 陳腐化해  
버려서 自社와 他社를 不問하고 그 實施可能性이 전혀  
없는 것 등이다.

#### 다) 권리의 평가기준

權利를 維持하느냐 拋棄하느냐의 選別은 前項(나)에서 이미 記述한 바 있다. 그 選別基準은 各企業이 共通的으로 그 技術分野의 特徵이라든가 企業方針에 副應하여서 確立해야 할 것인데 一般的인 評價基準으로서는 發明의 評價觀點과 一部가 重複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項目을 생각할수 있다.

- ① 發明課題의 大小와 市場의 需要性
  - ② 特許性(新規性・進歩性) 維持・繼續의 可能性(一  
回 權利로서 認定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後의 公知  
技術의 發見에 따른 變動)
  - ③ 發明의 唯一性
  - ④ 効果(性能・製品에 適用된 경우의 Cost)
  - ⑤ 發明技術의 將來性
  - ⑥ 技術供與의 可能性(國內・外)
  - ⑦ 製品으로의 實現性
  - ⑧ 製品으로의 適用持續性
  - ⑨ 他社의 實現可能性(國內・外)
  - ⑩ 實施許諾의 有無
  - ⑪ 製品의 重要性

評價基準의 適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索에 주의

할 必要가 있다.

- ① 각 평가 항목마다 평가 시점에 있어서의 상태를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한다.
  - ② 결정을 지을 때는 이들의 각 평가 항목에서의 단계를 참고로 하여最終적으로 결정하거나 각 항목마다의 총점을综合集計한 결과로 결정하거나 정하여 놓는다.
  - ③ 각 권리의 残餘 권리期間에 따라 각 평가 항목에重點을 두게 한다.

이는 특히 日本, 西獨 등에서는 權利維持의 年金額이 해마다 上昇하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日本에서는 9年째를 경계로 特許權에서는 年金額에 대폭적인 差異點이 있다).

